

## (사업방법서 별지)

### 1. 보험종목의 명칭

무배당 뉴원화고정납입특약

### 2. 보험의 적용

외국통화(이하 “외화” 라 한다)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서 대한민국 법화(이하 “원화” 라 한다)로 매 납입 해당월에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### 3.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

보험기간	주계약의 보험기간
납입기간	주계약의 납입기간

### 4. 보험료 납입주기

주계약의 납입주기

### 5. 배당에 관한 사항

배당금 없음

## 6. 보험료에 관한 사항

- 가.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는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5%로 한다.
- 나. 이 특약이 부가된 시점의 주계약 기본보험료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고정(固定)한 금액을 '원화고정보험료'라 한다.
- 다. 매회 납입하는 원화고정보험료를 외화로 평가한 금액 중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특약의 계속보험료로 한다.

## 7.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

- 가.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의 기본보험료와 이 특약의 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하여 납입한다.
- 나.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해당 월 주계약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.

## 8.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에 관한 사항

### 가.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

- 1)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원화 환산 및 외화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은 원화고정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직전 영업일(이하 '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'이라 한다)로 한다.
- 2)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은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(이하 '주거래 은행'이라 한다)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이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의 그 직전 영업일로 한다.

### 나.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율

'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'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(최종고시환율)하는 외국통화 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과 최종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범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

환산율을 '원화환산 및 외화평가율'이라 한다.

## 9.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

주계약의 적립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## 10. 주계약 기본보험료 부족시 보전에 관한 사항

가.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화고정보험료의 외화평가 금액이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보다 적을 경우, 이 특약의 「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이 특약의 적립금에서 공제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부족한 금액(주계약 기본보험료의 부족한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관리비용 제외)을 보전한다.

나. 이 특약의 적립금에서 공제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다.

다. 해당월 원화고정보험료의 외화평가 금액이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보다 적고 해당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이 특약의 적립금이 기본보험료보다 적을 경우, 회사는 계약자에게 익월 10일까지 이 사실을 통지하며, 계약자는 회사의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.

그러나, 계약자의 선택이 없을 경우에는 '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'를 선택한 것으로 한다.

1)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

2)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

## 11.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

### 가.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기간(이하 '납입유예기간'이라 한다)

- 1) 납입유예기간은 '10. 주계약 기본보험료 부족시 보전에 관한 사항'에 의한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에 도래하는 원화고정보험료 납입기일부터 1년으로 한다.
- 2) 계약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납입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납입 유예기간 연장은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 종료 15일전 또는 회사의 납입유예기간 종료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납입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.

### 나.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의 효력

- 1)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주계약의 해지환급금에서 필요한 주계약 위험보험료와 주계약 계약체결비용(납입 후 유지관련비용)을 공제하여 대체한다.
- 2) 납입유예기간 중 주계약의 해지환급금에서 주계약의 위험보험료와 주계약의 계약체결비용(납입 후 유지관련비용)을 더 이상 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가 중지된다.
- 3) '2)'에 의하여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가 중지된 경우, 회사는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가 중지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며, 계약자는 회사의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"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"을 신청해야 한다.

그러나, 계약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상실된다.

- 4) 납입유예기간 및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가 중지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계약의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.

#### **다. 납입유예기간 종료 및 새로운 보험료 납입기일 통지**

- 1)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및 새로운 납입기일을 통지한다.
- 2)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2개월 이상 원화고정보험료의 외화평가 금액이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보다 큰 경우 납입유예를 중지하고 원화고정보험료를 납입 할 수 있다.

#### **라. 주계약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**

- 1) 보험기간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한다.
- 2) 납입기간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순연한다.
- 3) '1)' 또는 '2)'의 적용에 따라 변경후의 보험기간 또는 납입기간이 주계약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사업방법서 이내에서 변경한다.
- 4) '1)' 또는 '2)'에도 불구하고 단기납의 경우에는 계약자 신청에 따라 보험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# **마. 주계약 해지환급금 계산시 경과기간 적용에 관한 사항**

- 1) 주계약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납입경과기간월수에는 납입유예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.
- 2) 미상각 신계약비 상각기간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순연한다.

## 12.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

- 가.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이란, '10. 주계약 기본보험료 부족시 보전에 관한 사항'에 의한 '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'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 주계약 기본보험료와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5%에 상당하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새로운 원화고정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을 말하며, 이렇게 새롭게 고정(固定)한 금액인 '신(新)원화고정보험료'를 재산출하는 것을 말한다.
- 나. '가'에 따라 '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'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 해당일부터 매회 납입하는 '신(新)원화고정보험료'를 외화로 평가한 금액 중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특약의 계속보험료로 한다.

## 13.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

계약자에 의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은 인출할 수 없다.

## 14. 기타

기타 사항은 주계약에 준한다.